파주시 공고 제2026-2894호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환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1. 6.

파주시장

1. **공 고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환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2026. 11. 6. ~ 11. 20.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납부통지 금액(원)	반송사유	비 고
송○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길 ***, ***호	14,063,540	폐문부재 등 기타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환수 통지서

6. **공시송달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처분을 통지하오니, 파주시 복지지원과에서 납부방법(고지서 발부 및 은행 온라인 송금 등)을 안내받아 2026. 11. 30.(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등 에 의거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처(고지서 발부 등 납부안내)** : 파주시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031-940-5012)